

영국의 노동교육 사례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대영제국’ 영국의 시민교육

제국(Great Britain)이었던 국가의 역사에 부합이라도 하듯이, 영국의 사회과 교과체계 안에는 지리와 역사만 포함되어 있다. 사회과라는 교과목이 없다. 그러한 영국에 2000년대 들어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이 도입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역사와 지리 과목만으로는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되었다. 10여 년의 논란 끝에,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을 통해 도입된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NC)에 2002년도부터 학교 정규 교육과정(Key Stage 3 & 4; 우리의 중등과정) 내에 시민교육을 필수교과로 도입하였다. 중등학교부터 영어, 수학, 과학과 함께 시민교육을 필수교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시민교육을 필수교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다른 교과와의 연계 속에서 통합교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독립 필수교과로 정한 것이다. 2002년부터 국가교육과정에 도입된 시민교육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사항이고, 중학교 이후부터는 선택이 아닌 의무교과로 편성되어 있다.

영국에서 시민교육 관련 논의가 촉발된 배경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유럽연합 차원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정흥준·송태수·심성은·진숙경·황수옥(2018), 『노동교육의 진단과 합리화』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발췌해 보완한 것이다.

의 유럽 시민성 함양 교육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모든 청소년이 유럽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유럽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사회통합 관련 논의는 리스본 조약에서 강조되었는데, 리스본 조약 역시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 시민성’ 함양을 세부 목표로 채택하였다.¹⁾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성 함양교육은 물론 자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잃지 않도록 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평의회의 핵심과제가 “인권,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를 촉진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교육훈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유럽각료회의, 2010).

시민교육 관련 논의가 촉발된 배경의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종교교육 및 성교육과 함께 시민적 주체성의 확립에 필요한 역량의 강화를 위해 개인의 사회교육 및 경제교육을 내용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교육(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 PSHE) 과목이 필수교과로 도입되었다. 블레어 이후 보수당이 집권한 후 2007년 착수해 2011년 발표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사회와 경제 분야를 포함하는 PSHE를 필수교과로 도입하였으며 이는 개인 및 사회적 수준에서의 보건·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사회적 지원체계, 그리고 경제적 재정·재무관리의 내용을 교육하려는 조치였다.

■ 시민교육과 노동교육

근래 영국 사회과 관련 교과체계 재편의 배경이자 결과로 모아진 시민교육 과목과 PSHE 과목의 교육내용을 분석해보면, 시민으로서 노동(자) 관련 문제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1) ‘적극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 논의의 출발은 퍼트남(Putnam)에게서 많은 이론적 시사점을 끌어온다. Putnam(2000)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는 시민적 덕목과 시민의 참여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시민적 덕목과 시민의 참여는 바로 시민역량을 측정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시민교육 관련 논의의 핵심적 연구자인 크릭(Crick) 역시 살아 있는 민주주의는 적극적 시민(active citizens)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이때 ‘적극적 시민’이란 정치제도의 안과 밖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여하고 참여하는 시민역량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Crick, 2003).

<표 1> 시민성 매트릭스(Citizenship Matrix)

		1	2	3	4	5	6	7
		공동체 구성원	소비자	가족 구성원	평생 학습자	납세자	유권자	노동자
A	특정 역할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의 이해를 분명히 함							
B	특정 상황에 적절한 도덕적 가치의 틀에 적용							
C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문화, 성, 종교, 인종, 공동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함을 입증							
D	편견과 차별에 저항하여 싸우기							
E	정보의 출처(광고, 미디어, 압력단체, 정당)에 대한 비판적 평가							
F	재무관리							
G	의사결정 및 선택 시 위험과 불확실성 평가							
H	변화를 개시하고, 대응하고, 관리함							
I	특정 문제를 다루는 적절한 메커니즘이나 기관을 선정							
J	특별한 행동과정의 사회적, 자원환경적 영향 확인							

자료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2000: 37).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시민의 다양한 존재 양태를 드러내주는 ‘시민성 매트릭스(citizenship matrix)’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으로, 시민은 ‘공동체 구성원이고, 소비자이며, 가족구성원이고, 평생학습자이면서, 납세자이고, 유권자이고, 그리고 노동자’이기 때문이다(표 1 참조). 이런 다양한 존재 양태의 시민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및 정치적 관계들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교육과 노동교육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민 개개인에게 종합적으로(holistic) 진행될 때 완성되는 것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민교육과 노동교육은 시민성 매트릭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개별 분과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교차적으로 그리고 전 교과를 넘나들며 간학문적으로(interdisciplinary)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계기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성 매트릭스에서 확인하듯이, 시민의 매우 일반적인 존재 양태 중 하나가 노동자인 만큼, 그와 관련한 기본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계약체결 상대자인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연금 제도 및 평생학습자로서의 권리와 기회 등과 관련한 내용이 정부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체

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영국 수상의 사진과 정부부처별 소개가 아니라, ‘일, 직업과 연금 (working, jobs and pensions)’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표 2>의 ‘일터에서 당신의 권리와 노동조합’에서는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게 된다.

<표 2> 일터에서 당신의 권리와 노동조합

1	농업 노동자의 권리
2	일터에서의 감시: 노동자의 권리
3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
4	차별: 당신의 권리
5	경영정보제공 및 협의
6	노동조합 가입
7	고용주가 수집할 수 있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8	임신한 노동자의 권리
9	장애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노동자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
10	고용주에게 경영정보제공협약 체결 요구
11	노동쟁의 행위의 중단: 시민의 권리
1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업무 중단
13	노동쟁의 행위와 파업에의 참여
14	노동조합 대표로서의 권리
15	일터에서의 훈련 및 학습: 당신의 권리
16	다른 EU 회원국에서의 근로
17	연금수급연령 이후의 근로
18	직장 내 괴롭힘
19	작업장 내 온도

자료 : <https://www.gov.uk/browse/working/rights-trade-unions>(검색일: 2019.6.2)

시민성 매트릭스 체계에 근거해서 2013년 교육과정 개편안이 제시하는 시민교육 교과목의 핵심어는 ‘적극적 시민성’ 함양이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TES, 2014). 즉 높은 수준의 시민교육은 청소년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해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청소년들은 시민교육을 통해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민교육은 청소년이 성인으로서 자신의 경제적 안녕(wellbeing) 추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오해섭·박정배,

2013: 36).

다음으로, 노동교육은 경제교육 과목에서도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정부 부처 중 비즈니스·혁신·기능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가 2010년 발간한 『출발: 일할 권리와 책임(Starting Out: Your Employm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이라는 브로슈어에 잘 드러난다. 브로슈어는 일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20가지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동영상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고, 60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6개 과정의 수업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브로슈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차별 관련 이슈, 정보제공, 현장실습,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괴롭힘 문제 등 주제에 대해 구체적 발생 상황과 대처법, 지원기관 등을 소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노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로서 노동이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존재 양태 중 하나로서 노동을 소개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의 권리·의무를 모든 시민 각인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 중 하나로 소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정부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시민성’의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서 시민교육과 노동교육은 교육 및 훈련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포함)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과 훈련생들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시민성 함양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지위, 학생자치위원회, 과목 및 과정 위원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시민성 교육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 외에도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제공하는 양질의 시민성 함양 교육 기회를 갖게 된다. 후자의 시민사회(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은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서 환영받는다. 고용주들도 현장실습생을 위해서는 ‘시민성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에 노동조합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습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시민교육협회(Association for Citizenship Teaching: ACT)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자료 중에 노동조합에 의한 교육을 소개하는 독립 자료가 있다. ‘노동조합이 학교 안으로(Unions Into Schools)’라는 사이트는 영국노동조합총연맹(Trades Union Congress: TUC)만 아니라 교원노동조합, 유나이티(Unite) 및 공공연맹 등 다수 산별연맹 노동조합들이 참여하여 만든 것으로, 동영상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교육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 노동조합의 청소년 노동교육

영국의 연합노동조합 유나이트(Unite)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소개하고 노조의 역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Unite in Schools’라는 전국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10~11학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4단계 과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1년 유나이트는 교육당국에 15~16세 학생에게 노동조합주의에 관해 소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유나이트 사무총장 맥클러스키(Len McCluskey)는 11~16세 사이의 학생 대상 시민교육 수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많은 학교에는 시민교육 수업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종종 노동조합에 관해 질문을 받지만 대다수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The Guardian, 2011.9.12)라고 주장했다.

유나이트의 ‘Unite in Schools’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학습하게 된다. 노동조합에 대한 청소년의 올바른 이해를 촉구함으로써 바로 이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새로운 조합원들로 충원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TUC가 재원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 대상 교육사업을 적극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나이트는 2년 전부터 이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한적인 재원으로 운용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대의원(Union reps)이나 학습위원(Learning reps) 또는 적극적 활동가 등으로부터 강사를 충원하고 있다. 이들 강사에게는 교통비와 봉사에 대한 대가(약 150파운드/일)를 지불하고 있다. 강사들은 휴가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직(轉職) 대기자인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교정책에 따라 학교가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며, 혹은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진행되기도 한다. 지역별로 청소년 학생 중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변자(speakers)를 양성·확보하여 이들의 도움도 적극 받아가며 교육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들 학생은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교육 프로그램 유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학교의 교원노동조합 대의원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하고 혹은 학교장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고 한다. 현재 유나이트는 캠페인 노조(Campaigning Union)라 할 정도로 조직 확대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이며, Unite in Schools 프로그램은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급단위 혹은 대형 강의실 수업(약 200명까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육도 있으며, 학교의 요청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수업시간은 학교의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제공하고 있다. 강사는 1시간 강의의 흐름을 5분 단위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데, 일례로 도입 5분, 노동조합의 의미 및 필요성 관련 동영상 5분, 참여식 프로그램 25분, 피드백 5~10분, 엔딩 5분 등으로 계획·진행한다.

이 외에 Unite in Schools 프로그램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조합 관련 역사(略史) 및 워크북 자료를 준비하여 정형화된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강의는 대개 학교장 내지는 학교 교원이 노동조합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의 활동 및 작업장에서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산업안전, 근로시간, 교육훈련을 통한 자기계발의 권리, 그리고 집단적 요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권리 등을 중심 내용으로 소개한다(그림 1, 그림 2 참조).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유나이트의 일반 조합원 중에서 훈련을 거친 조합원들로 강의는 주로 학생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동 기본권 및 노동조합 관련 내용 외에도 사회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황을 전달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청소년의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여 노동조합 관련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새로운 조합원들로 충원될 학생 대상 청년층의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우리 모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 일터에서의 다섯 가지 권리(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리플렛)

Decent Work for All
Know your rights at work

1 A wage you can live on
2 Safe, secure work
3 Guaranteed hours each week
4 Training and career opportunities
5 A collective voice and union representation

@Decentwork4all
Decent work 4 all #fightfor5
www.unitetheunion.org/decentwork4all

FIGHT FOR Unite

If you don't have these things then join us in campaigning to win the five things that make decent work for all!

[그림 2] 노동조합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달성하였는가? (강의 보조자료)



■ 영국 노동교육의 함의

최근 2011년 시민교육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새롭게 정립된 영국 시민교육 교과목은 한편으로 정치참여와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생활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현재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에는 경제 교과목이 없고, 시민교육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경제교육이 특정 경제주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거나 옹호, 혹은 특정 이론을 교육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개 시민의 독립적 경제주체로서의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은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이고, 소비자이며, 가족 구성원이고, 평생 학습자이면서, 납세자이고, 유권자이고, 그리고 노동자(일하는 사람)’라는 다양한 존재 양태를 띠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및 정치적 관계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시민이어야 한다. 고용주도 실상은 일하는 사람, 즉 노동자이다. 다양한 존재 양태에 따라 권리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의무의 이행자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고용주로서 권리와 책임은 시민성 교육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 사회보장권 및 노동기본권 등은 영국 정부 홈페이지 1면에 체계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여러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노동조합이 학교 안으로(Unions into Schools)’에서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필요성, 노동조합의 역사와 사회·역사적 의미, 그리고 노조의 다양한 활동 내용 등이 청소년·학생들의 학습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유나이티(Unite)는 미래의 조합원이 될 세대가 노동조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10여 년 동안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노동조합이 학교에 들어와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교육당국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시민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당사자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교육에 대한 편향적 이해에서 벗어나, 건강한 시민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노동교육을 인정하는 교육당국이나 사용자단체 등의 태도야말로 영국 노동교육이 우리사회에 주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ICLI**

참고문헌

- 오해섭·박정배 (201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Ⅲ): 정책분야 지원체계 구축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Crick, B.(2003), “The English Citizenship Order 1999: context, content and presuppositions”, in Lockyer, A., B. Crick, and J. Annette(Eds.),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ldershot, Ashgate, pp.15~29.
- Department for Education(2013),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Department for Education”.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2000), “Citizenship for 16-19 Year Olds In Education And Training”, Report of the Advisory Group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Schuster(퍼트남(2016), 정승현 역, 『나 홀로 볼링 -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 TES Resources(2014), “Citizenship Key Stages 3 and 4 Resources to help you teach the 2014 curriculum for citizenship.”